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지 광 천)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기획실장)	일 자	질의	2020년 12월 9일
			답변	2020년 12월 10일
회 의	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2)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질문요지

- 미탄면과 진부면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인건비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과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의 공중화장실을 총괄하여 관리하지 않는 이유 등

답변내용

- 지광천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- 붙임 1. 미탄면, 진부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 화장실 내역 1부.
2.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검토 내용 1부. 끝.

미탄면, 진부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 화장실

읍·면	연번	구분	위치
미탄면 (11개)	1	소규모 관광지 간이 화장실	회동계곡입구(청옥교)
	2		회동계곡(상수원보호구역 위)
	3		회동계곡(사방댐 옆)
	4		회동계곡(계곡 내 정자)
	5		울치리세트장(주차장)
	6		문희마을 주차장(백운산 등산로 주차장)
	7		평안1리 족구장(구 배수지)
	8		문희마을 입구공원(출렁다리)
	9		평안1리 산 102(이무기굴 옆)
	10	공중화장실	미탄면 터미널 뒤
	11	해병대 안보공원 (복지과 소관)	미탄면 해병대 안보공원
진부면 (2개)	1	월정 공중화장실	진부면 동산리 12번지
	2	진부전통시장 공중화장실	진부면 하진부리 149-1

평창군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검토보고

◇ 실·과·소 및 읍·면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관계법령에 따른,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

※ 기획실-4069(2020.4.8.)호 군수 지시·훈시사항

I 공중화장실 현황

○ 공중화장실 : 총 305개소

-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(201개소)

구분	계	공원	관광지	버스 터미널	시장 상가	휴게소	기차역	체육 시설	기타
개소	201	4	29	6	7	4	2	3	146

※ 기타 : 공공기관 109개소, 주유소 37개소

- 과·소 및 읍·면 관리 화장실(104개소)

구분	계	평창읍	미탄면	방림면	대화면	봉평면	용평면	진부면	대관령면
개소	104	27	7	7	15	3	5	24	3
구분	복지과	문화 관광과	환경 위생과	산림과	동강관리사업소	마을법인 등			비고
개소	2	2	2	3	1	3			

※ 둔치, 계곡, 등산로 및 가로변에 위치한 간이화장실이 91개소임

○ 금회조사 104개소 중 종부둔치화장실 등 6개소는 공유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막동·장전계곡 화장실 등 98개소는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

- 25개 화장실만 균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, 건설교통부 등 국유지 36개소, 산림청 27개소, 강원도 4개소, 월정사·미탄영농조합법인·개인소유 토지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

II 추진경위

- 2020.04.07. : 4월 월간회의 지시
- 2020.04.22. ~ 06.11. : 12개부서 및 8개 읍·면 현황자료 조사제출
- 2020.06.15. ~ 06.30. : 기존 관리 화장실과 비교하여 자료정리
- 2020.07.01. ~ 07.10. : 과·소 및 읍·면 조사 화장실 일부 현장확인
- 2020.07.16. : 운영현황 검토결과 구두보고, 현행과 같이 관리.
단 관리주체가 없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

III 타시군 사례(인제군)

-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운영 : 2020.4.1.~12.31.(9개월)
 - 매년 3월 소액수의 견적입찰 방법으로 청소위탁 용역업체 선정
- 대상시설 : 총88개소(수세식 14, 재래식 74)
- 사업비 : 216,121천원(5개소 분할계약, 평균 2,456천원)
- 화장지, 물비누, 방향제 등 편의용품과 청소소요되는 도구,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공구 및 부품 등은 발주처인 군에서 제공
-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고 화장실 설치 위치에 문제가 없으며 재산관리 전환이 가능한 화장실 청소위탁운영

IV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

-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·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
- 공공기관, 주유소 등 관리주체가 분명하고 시설물에 부속된 기존 201개소 공중화장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위생과는 정기점검 강화

- 추가 조사한 104개소 화장실은 읍면, 담당부서, 마을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전환 필요
- 관리전환을 위해 건물에 대한 재산등록 (98개소) 및 국유지, 강원도 개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화장실(79개소)등은 사전 정리 필요
-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관리주체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며, 공중화장실 총괄, 관리감독, 개방화장실 지원 등 환경위생과 주 업무 이행 및 청결을 위해 지도 점검 수시 실시

- 붙임 1. 공중화장실 관리 관계 법령
2. 공중화장실 현황(기존관리 201개소)
 3. 공중화장실 현황(금회조사 104개소)

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

제8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·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 (이하 “공중화장실 관리인“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